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

: '소통'과 '권리' 추구

황수연**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여성의 訴冤 활동: 공적 발언의 주체, 내용, 수용자
3.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
 - 3.1. 처/첩 분변과 적통 인정 요구
 - 3.2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치 참여
 - 3.3 소유권과 재산권 투쟁
4. 맺는 말: '소통'과 '권리'추구

〈국문초록〉

유교이념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혼인제도, 재산, 상속에 관한 제도와 법률을 새로 만들어 백성들을 유교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여성들은 달라진 제도와 관습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부당함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적 발언인 상언에 담았다. 조선 전기 여성은 신분을 막론하고 공적 발언의 주체가 되어 가족 혹은 자신을 위해 상언을 올렸다. 국왕을 비롯한 담당자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당대에 이슈가 되었던 상언은 처/첩 분변과 적통 인정 요구, 권력에 대한 저항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506)

** 홍익대학교 교양과 초빙교수.

정치 참여, 소유권과 재산권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다. 조선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려는 타인과 '소통'을 시도했다. 경우에 따라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였다.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은 이후 여권통문, 독자투고란, 국민청원 등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을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와 태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

핵심어 : 조선, 여성, 공적 발언, 상언, 소통, 권리

1. 들어가는 말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의 언론 제도는 민의 수렴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언관(言官)의 언론이 중심이 되었고 영·정조에 이르러 여론의 수렴 범위가 일반 민서에까지 넓혀짐으로써 상언과 격쟁이 활성화되었다¹⁾고 알려져 왔다. 영·정조에 실제로 상언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 세종은 “이후로 격고하여 상언하는 것은 익명서를 제외하고는 비록 그 문의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 지취(指趣)를 물어서 계달할 것이며 막아서는 안 된다.”²⁾고 의금부에 전지하며 상언을 통해 언론을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세종의 정책은 성종에게 이어졌다.

1)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19-21쪽.

2)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성종은 즉위년(1470)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해사(該司)에 고하여 퇴장(退狀)을 받은 다음에야 의금부에 고해서 승정원에 전해지기 때문에 식량을 낭비하며 묵어야 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하소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며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할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이어 성종 6년에는 지방민이 상언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³⁾ 성종 9년에는 상언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장에 구애 없이 상언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등⁴⁾ 민의수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선 전기에도 제법 많은 상언이 쓰였다. 상언은 최고 권력자인 국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소와 유사하다. 상소는 국왕에게 간언을 하거나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상언은 비교적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상소와 상언 모두 문자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는 점에서 ‘공적 발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성의 공적 발언인 상소에 관한 연구에 비해 여성의 공적 발언인 상언에 관한 연구는 소략하다. 1727년에 작성한 김씨 부인 상언을 소개한 임형택은 여성의 공적 발언에 숨긴 정치성과 여성적 시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⁵⁾ 서경희는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3) “근대에 상언하거나 진소하는 사람이 자못 많다. 대개 지방민들인데, 수령에게 호소하여도 수령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인가? 감사에게 고발하여도 감사가 조사하지 않기 때문인가? 어찌하여 부분하게 억울함을 호소함이 많은가? 송사를 심리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갖추어 기록해서 아뢰게 하라.” 『성종실록』61권 성종6년 11월 5일.

4) 임금이 이르기를, “무릇 상언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만이 아니고, 역시 먼 곳에 사는 사람도 많다. 만약에 본관(本官)의 퇴장(退狀)에 구애한다면 원통한 마음을 품은 자가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문제이겠는가? 옛날에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하였던 것은, 대개 민정(民情)을 쉽게 상달(上達)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간절하지 않은 상언이라면 내 스스로 마땅히 작량(酌量)하여 보류(保留)할 것이다.”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7일.

5)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화사연

서술 방식 등을 자세히 살펴며 김씨 부인의 행적과 상언은 남성의 정치 성과는 차별화된 측면에서 설득과 해결을 모색하는 양반 여성의 유연한, 광의의 정치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⁶⁾ 김경숙은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 활동을 상언, 격쟁, 발괄, 소지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살폈으며,⁷⁾ 김명숙은 조선후기 여성의 소원제도를 효명세자 대청기에 한정하여 다루었다.⁸⁾ 황수연은 김씨 부인을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결과, 김씨 부인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증명과 논박의 논리적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⁹⁾

이처럼 조선 여성 상언에 대한 연구는 특정 개인이나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의 정소나 소원 활동은 민원 내용이 입후와 산송 등 집안과 가문을 위한 일 또는 남편이나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여 여성 소원 활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유교이념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혼인제도와 상속제도를 바꾸어 백성들을 유교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지배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습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조선 전기에는 어느 때보다 백성들 사이에 이로 인한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종법제도는 여성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여성들은 달라진 제도와 관

구],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358-384쪽.

6)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6, 39-75쪽.

7) 김경숙, 「조선 후기 여성의 정소활동」, 『한국문화』 제36호, 한국문화연구소, 2005, 89-123쪽.

8) 김명숙, 「조선후기 여성의 訴冤활동-효명세자 대청기의 상언·격쟁을 중심으로-」, 『동덕여성연구』, 제7호, 동덕여성연구학회, 2002, 11-29쪽.

9)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 특징」, 『열상고전문학』 제46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419-447쪽.

습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부당함을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상언에 담았다. 이에 본고는 태조부터 연산군까지에 해당하는 조선전기 여성의 공적 발언인 상언¹⁰⁾을 대상으로 조선 전기 여성이 가족, 사회, 국가와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했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의 訴冤 활동: 공적 발언의 주체, 내용, 수용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장에서는 공적 발언의 주체와 내용 그리고 여성의 공적 발언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건국 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조선의 소원 제도는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 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청원과 유사하다. 신문고 제도는 훌륭한 청원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¹¹⁾ 일반 백성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실제로는 상언·격쟁을 통해 소원(訴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 이념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은 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혼인제도, 재산권, 상속 등에 관한 제도와 법률을 새로 만들고 법전을 제정하는 등 고려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백성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0) 조선왕조실록에서 상언에 관해 다룬 기사를 검색해보니 총 3,034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상언에 관한 기사는 350여 건이다. 언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했던 정조 시대에는 실록에 다만 “oo건을 판하였다.” 고만 기록하고 별도로 『일성록』에 수록하고 있어 실제로 더 많은 여성 상언 기사를 접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수록 상언만 대상으로 하였다.

11) 김성배,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23권 3호, 국제헌법학회, 2017, 181쪽.

그러한 방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주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상언을 적극 활용하였다.

조선 전기 여성은 왕족, 사족, 중, 비구니, 궁녀, 귀화한 외국인 등 신분을 막론하고 공적 발언의 주체가 되어 자신 혹은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언을 올렸다. 왕족 여성은 종친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 아내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상언에 담았다. 숙혜옹주¹²⁾는 어머니 소혜 공주 노씨가 자신의 집에서 거처할 것을 허락해달라는 상언¹³⁾을 올렸고 영웅대군¹⁴⁾의 부인 송씨¹⁵⁾는 상언을 통해 외아들 이원(李源)의 복직을 청하였다.¹⁶⁾

사족 여성은 공신의 어머니 혹은 아내, 딸의 입장에서 아들, 남편, 아버지를 위해 상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의 감형, 仕路의 개방, 부임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상언을 주로 올렸다. 서성대의 어머니는 “독자 성대를 존류양친(存留養親)의 법에 의하여 그의 사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¹⁷⁾라는 내용으로 상언하여 허락을 받았다. 관가의 물건을 훔친 김상을 위해 어머니는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용서해서 머물러 어미를 봉양하게 해 주소서.”¹⁸⁾라는 내용의 상언을 올렸다. 사법부에서는 법대로 다스릴 것을 청

12) 태종의 서6녀, 이정녕의 처.

13) 『단종실록』 6권, 단종1년 6월 5일.

14) 영웅대군 이염(李璫:1434~1457) 세종의 제8남.

15) 영웅대군의 아내 대방부부인(帶方府夫人). 송복원의 딸. 영웅대군은 처음에 대방 부부인인 여산 송씨와 혼인했으나 세종의 명으로 폐출하고 정충경의 딸 해주 정씨와 결혼했다. 단종 때 해주 정씨를 폐출하고 다시 여산 송씨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김영철의 딸인 연안 김씨와도 혼인했다.

16) 『성종실록』213권, 성종 19년 2월 28일.

17) 『세종실록』125권, 세종31년 8월16일.

18)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13일.

했으나 세종은 김상이 공신의 후예라는 이유로 단지 고신만 거두고 귀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문권 위조 범죄에 연루되어 신문을 받는 아들 갈주를 위해 그의 어머니가 상언을 올리자 세종은 "이 할미가 그의 늙은 것만을 믿고 저는 죄에 연좌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감히 상언하여 고약한 자식을 법망에서 탈출해 내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하며 속히 갈주를 치죄할 것을 명령하였다.¹⁹⁾

이처럼 공신 여부와 죄의 경중에 따라 어머니가 올린 상언의 요구 수락 여부가 달랐지만 연로한 여성이 '효' 윤리와 인정에 호소하며 자식을 위해 상언하는 경우 요구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²⁰⁾ 이는 법치보다는 예치를 중시하던 국가의 이념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입장에서 여성은 국문(鞫問)을 받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형 요구를 위해 상언을 올렸다.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을 상언에 담기도 하였다. 한편 처/첩 분별에 대한 요구나 노비나 전지 등의 소유권과 재산권 유지 등의 문제로 상언을 올리기도 하였다. 처/첩 분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인 동시에 자손의 행보와 관련이 있고 재산권도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상언에 주목하여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 여성의 상언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였던 관료 대신을 비롯한 국왕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숙감(李淑臧)의 아내 김씨는 "이숙감이 김생

19) 갈주(葛周)의 어머니의 상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할미가 아들 다섯이 있더니, 혹은 병들고 혹은 죽어, 오직 주(周) 하나가 노구(老嫗)를 입히고 먹이고 하옵더니, 이제 이계충(李繼忠)의 문권 위조(文券僞造)로 말미암아 국문에서의 신문(訊問)이 몹시 고통스러워서 장차는 필경 죽고 말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이 자식을 용서하시와 이 노구를 살게 하소서."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14일.

20)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6월 28일.

(金生)을 간통하지 않았는데, 사헌부에서 그릇 형벌하여 항복을 받았습
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남편의 간통을 무마하려는 상언을 올렸다. 사헌
부에서 "이숙감이 정상(情狀)이 나타나고 일이 밝혀졌는데도 그 아내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도리어 본부(本府)를 허물하였습니다. 청컨
대 다른 관사에 옮기어 국문(鞫問)하고 아울러 몽롱하게 상언한 죄를 국
문하소서."라고 하였다.²¹⁾

이숙감의 아내 김씨는 자신의 남편이 간통죄로 형벌을 받자 간통 사실
이 없었고 사헌부의 형벌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상언을 올렸다. 그러자
사헌부에서 이숙감이 자신의 아내에게 상언을 하게 하였다고 하며 김씨
가 어리석게 상언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여성
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상언을 올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남편의 권
유나 강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상언을 올렸다는 혐의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그런 경우 상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역효과를 내
거나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상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고 정부와 육조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
많았다. 상언에 대한 최종 판결자는 국왕이기 때문에 간혹 국왕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²²⁾

여성이 상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보
인다. 성종 때 송복산 아내 숙인 이씨는 자신의 아들 송찬이 양자로 간

21) 『세조실록』22권, 세조 6년 윤11월 19일.

22) 주로 종실과 관련된 경우 국왕이 관대하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체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영웅대군의 부인 송씨가 이원을 서용해달라
는 상언에 대해 성종이 허락하자 현납 황계옥이 마땅하지 않다고 간언을 올렸다.
성종은 “부인이 정사에 간섭한다고 했는데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벼슬을 시키고
자 하여 상언하는 것을 어떻게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저 자식이
아버이를 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상언하는 것을 모두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송씨 부인의 편을 들었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12일.

집의 유복지친과 혼인을 하여 서경(署經)²³이 거부되자 상언을 올려 “국가에서 법을 운용함이 한결같지 못한 것이 마음에 실로 몹시 안타깝습니다.”²⁴라고 하였다. 이씨는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유복지친과 서로 혼인을 금하는 조령이 없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송찬의 잘못이 아닌 데 서용되지 못하니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것은 곧 국가가 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씨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국가에서 법을 운용함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며 공공성을 획득하려고 하였다. 이씨의 상언을 계기로 “이후부터 계후한 부모의 내외 유복친(內外有服親)과는 서로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서로 혼인한 사람도 계후하지 못하도록.”하는 조령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상언으로 인해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경우도 있다.

3.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

실록에는 어떤 여성이 상언을 해서 채택되었다는 단편적 언급부터 구체적으로 상언의 내용이 실리기도 하는 등 여성 주체 상언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당대에 담론을 형성하며 이슈화되었던 상언을 중심으로 처/첩 분변과 적통 인정 요구,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치 참여, 소유권과 재산권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상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시비를 가리기보다 여성들이

23)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어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24)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9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떤 방법의 글쓰기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3.1. 처첩 분별과 적통 인정 요구

조선시대 이전에도 적처와 첩을 구분하여 대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조선 건국 후에는 유교적인 가족 질서를 세우려는 정책에 의해 일부일처제가 확립됨으로써 더욱 확고한 처첩질서가 형성·운영되었다.²⁵⁾ 태조 때 이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처는 한 명 뿐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사회적 관습과 법률의 불일치로 인해 처첩 분별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이 상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진(李鎔)의 아내 최씨(崔氏)가 상언(上言)하기를,

가옹(家翁) 이진이 선처(先妻) 김씨는 적조모 창희택주 정씨의 노비 문권에 김씨의 어머니를 첩의 딸이라 하였기 때문에 내치고, 드디어 저를 아내로 삼아 작첩(爵牒)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정묘년(1447년) 친시(親試)에 가옹이 두 아내를 아울러 두었다 하여 사위 원구의 부시(赴試)를 허가하지 않으므로 가옹이 진소하니, 헌부(憲府)에 명하여 밝히게 하셨는데, 헌부에서 김씨가 첩의 소산이라는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다 하여 아내를 두고서 또 아내를 얻은 것으로 논하였으므로, 도로 이이(離異)하게 하고 작첩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뒤에는 다시 결합하였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도로 작첩을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²⁶⁾

25) 박경 「조선전기 처첩질서 확립에 대한 고찰」, 『이화사학연구』 제27집, 184쪽.

26) 『문종실록』7권, 문종 1년 5월 6일.

이진은 전처 김씨가 어리석고 계사(繼嗣)가 없다는 이유로 최씨를 다시 맞아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최씨의 사위가 무과를 보려고 하자 장인이 병처(竝妻)한다는 이유로 훈련관에서 과거 보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이진이 상언하니 국가에서 김씨를 적처로 삼고 최씨와는 이혼하여 첩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진이 최씨와 이혼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다시 상언을 하자 세종이 우대하여 이를 허가하였고 이진은 다시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세종이 우대하였다는 것은 두 아내를 데리고 한 집에서 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2처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헌부에서 최씨의 작첩을 거두어 첩으로 논정하였다. 위의 상언은 이진이 사망 한 후 최씨가 “다시 결합하였다.”는 이유로 작첩을 돌려 받고 처로 인정받고자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태조 때부터 1처만 인정한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 2명 이상의 처를 데리고 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에 봉해진 홍윤성(1425~1475)은 죽기 전까지 김씨 여성과 살았다. 하지만 김씨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남씨 처가 있었기 때문에 홍윤성 역시 2처를 소유한 상태였다. 홍윤성이 죽고 난 후 본처인 남씨가 상언을 올려 홍윤성의 처첩 분별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상언이 전해지지 않지만 남씨가 자신이 처임을 주장하며 김씨를 첩으로 논정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홍윤성이 병처한 것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과 처첩을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²⁷⁾ 홍윤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치죄할 방법은 없었지만 처첩 분별을 비롯한 혼인 제도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기강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

27) 이에 관한 실록의 기사는 22건이며 성종 7년에 시작하여 성종 17년에 마무리되었다.

에 당대의 여러 대신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답론을 형성하였다.

이 논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禮無二嫡’ 과 ‘처음에 얻은 아내가 처이고 뒤에 얻은 아내는 첩이다.’ 라는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혼인이 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남씨를 棄妻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 남씨가 처이고 뒤에 맞은 김씨가 첩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성종은 혼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김씨의 이름이 명부에 올랐고 궁궐에 출입했다는 사실²⁸⁾, 양반 가문의 여성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씨를 첩으로 논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²⁹⁾ 그러나 김씨가 명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홍윤성을 비호했던 세조의 특혜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를 처로 인정하는 것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상소를 올리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종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미루다가 마침내 김씨를 처로 인정하였다.³⁰⁾

그 결과 예외적으로 남씨와 김씨 모두 홍윤성의 처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일은 2처를 인정한 예외성 때문인지 이후 야담과 사서에도 등장한다. 우리나라 여성사인 『본조여사』를 작성한 김상즙³¹⁾은 김씨 여성이 처로 인정받기 위해 승정원의 일기를 증거로 삼는 등 주도면밀했던 점을 기술

28) 내명부에는 오로지 정처만 오를 수 있다. “모든 부인으로 봉작받은 자는 반드시 실녀로 남의 정처가 된 자라야 봉작 받을 수 있고, 비록 정처라 하더라도 원래 실녀가 아닌 자는 봉작 받을 수 없고 모관모처고씨라고만 칭한다. 그 세계에 허물이 있는 것이 명백한 자는 정처라 하더라도 봉작받을 수 없고, 봉작명분에 없는데도 멋대로 칭하는 자는 통렬히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남편이 죽고 개가한 자는 봉작을 추탈한다.”

29) 성종이 김씨를 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고 있으나 김씨를 첩으로 인정하면 아버지인 세조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30) 『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6일.

31) 『본조여사』는 1898년에 김상즙이 편찬한 여성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황수연, 「『본조여사』 연구」,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18, 참고

하며 슬기로운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³²⁾ 하지만 남씨의 상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처의 입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³³⁾

다음은 함양군 이포의 아내 태인 군부인 이씨의 상언이다.

졸(卒)한 함양군(咸陽君) 이포(李諱)의 처 태인 군부인(泰仁郡夫人) 이씨가 상언하기를,

"가翁(家翁)인 이포의 아버지인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祿)의 장자 순성군(順成君) 이개(李愷)에게 적자는 없고 단지 첩의 아들만 있었는데, 세조께서 첩의 아들로써 대군의 제사를 받들게 함은 불가하다고 하여 차차 포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개의 첩자 오천부정 이사종(李嗣宗)이 성조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몰래 탐리(貪利)할 것을 품고 가翁을 모훼(謾毀)하며 적통(嫡統)을 빼앗고자 꾀적합니다." ³⁴⁾

이포는 양녕대군 이제의 둘째 아들이다. 큰아들은 순성군 이개인데 그에게는 정실의 아들이 없고 단지 첩의 아들만 있어 세조가 둘째 아들 포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런데 이개의 첩자 이사종이 적통을 빼앗고자 하여 이포의 아내인 이씨가 상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이사종은 이개의 양첩(良妾)의 아들이니, 또한 봉사할 수 있으나, 세조께서 이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뒤따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성종도 이에 따랐다. 천첩이 아니라 양첩의 아들이기 때문

32) 김씨의 이야기는 『본조여사』의 <지혜(慧識)>편에 수록되어 있다.

33) 홍윤성의 처첩 분간은 이후 비슷한 경우에 선례가 되어 판단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황효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4)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에 이사종이 적통을 잇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세조가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세조의 뜻을 따라 이포가 적통을 잇도록 하지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시집의 적통 계승 문제를 남편이나 아들 등 남성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아내 이씨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이 종법 질서 제도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면모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적통을 이어 제사를 지내는 일은 상속과 재산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씨는 이사종이 적통을 빼앗고자 하는 태도를 ‘탈리’로 몰고 갔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적통을 잇는 것은 세조가 인정한 것이고 이사종은 성조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고 헐뜯는 행위(謾毀)’로 규정하였다. 이씨 역시 ‘세조’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을 끌어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글쓰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5)

종실 여성뿐만 아니라 시족 여성도 집안의 적통 문제에 대해 상언하였다.

고(故) 부령 부사(富寧府使) 김익수(金益壽)의 아내 송씨가 상언하기를,
 "지아비 김익수는 곧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연지의 적자인데 일찍이 부령 부사로 있다가 정해년의 난에 죽었습니다. 그 때 김덕홍이라는 아

35) 양녕대군의 적통을 잇는 문제는 연산군 때와 숙종 영조 때도 반복되어 논의 되었다. 연산군은 “종실은 상민과 다르니 양첩의 아들이 제사를 이을 수 있다.”고 하며 이사종이 적통을 잇도록 허락한다. 숙종 영조 때는 이사종의 어머니가 처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이포가 적통을 잇도록 하는 수교가 내려졌다. 고종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지만 “사체(事體)로 따져 보더라도 다시 의논할 것 없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조 때에 수교(受敎)한 대로 옛날처럼 양녕 대군의 둘째 아들 함양군(咸陽君) 이포(李諱)의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上奏)합니다.”라는 상소에 고종이 윤허하여 결국 이포의 집에서 적통을 잇게 된다.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5월 19일.

들 하나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강보에 있으므로, 시아버가 ‘덕홍은 나이가 어려 뒷일을 부탁할 수 없다.’ 하여, 막내 아들 김견수로 적자를 삼아 선대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김견수가 이미 죽고 김덕홍이 또한 이미 장성했는데 본 종가(宗家)의 적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됨은 인정과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니, 법에 의거하여 후사로 세우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³⁶⁾

김익수의 아내 송씨는 장자인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 김연지가 손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내 아들을 적자로 삼은 사실을 말하며 다시 적손인 자신의 아들 김덕홍을 후사로 세우게 해달라는 내용의 상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와 영돈녕 이상의 관리, 의정부 관원들이 장자인 김익수의 아들 김덕홍을 적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유언을 남긴 김연지의 말대로 차자인 김견수를 적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성종은 “김연지의 유명대로 하여 그전대로 김견수를 적자로 삼으라.” 고 하였다.

송씨의 요구는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집안의 적통을 이으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어 이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종법 질서에 적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종법 질서가 강화되면서 여성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지만 그로 인한 보답과 권한이 따랐기에 여성들은 적통을 잇기 위해 이처럼 투쟁하기도 하였다. 송씨는 시아버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종가의 적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은 인정과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시아버지의 잘못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송씨의 상언을 접한 대신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대신들 사이에서

36) 『성종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5일.

적자 지정 문제와 별도로 상언을 한 송씨를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들은 “다만 송씨가 허물을 시아버의 명에 돌리며 적자 다툼을 하는 것은 진실로 대체에 방해롭다.”, “진실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명한 것도 아니요 또한 사정에 따르느라 적자를 폐한 것도 아닌데, 그의 유연한 뜻을 어기고 관(官)에 고하여 적자를 다투는 것은 자손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다만 송씨가 시아버의 명령을 그르케 여기며 신소(申訴)하여 적자를 다투는 것은 또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여 송씨가 상언을 올린 것 자체가 불경하고 강상이 문란해질 것³⁷⁾이라며 문제시 하였다. 효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지만 효와 적통의 문제가 상충될 때 송씨는 시아버지에 대한 효보다 자신과 아들을 포함한 집안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송씨가 생각한 올바른 인정과 법은 자신의 아들이 적통을 잇고 제사권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처/첩의 분변과 적통의 인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신분과 직결되었고 제사, 재산, 상속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처/첩과 적/지자를 분변하면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위계 질서와 긴장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이었다.

3.2.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치 참여

앞에서 살핀 홍윤성의 후처 김씨가 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조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윤성은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를 도

37) "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는 법인데, 이번에 자부가 소청(訴請)한 것 때문에 경솔하게 김연지의 유명(遺命)을 고친다면, 이는 아들 된 사람들의 체 아버를 그르케 여기는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어서 강상이 문란해지게 될 것이다" 『성종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25일.

와 왕위에 오르게 한 공신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었다. 홍윤성과 관련한 또 다른 여성 윤덕녕의 상언이 남아있다.

윤덕녕은 홍산 정병 나계문의 아내인데 나계문은 홍윤성의 종 김석을 산과 역리에게 맞아 죽었다. 이에 관아에 호소하였으나 현감은 홍윤성의 위세가 두려워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역리만을 가두었는데 그마저도 홍윤성의 종들이 감옥에서 빼내갔다. 그리고 도리어 윤덕녕의 오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두었다. 윤덕녕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아뢰며³⁸⁾ “권세하는 집이 자못 위복(威福)을 베풀어, 소재(所在)에 잔악하고 해치는 것은 백성이 의뢰하여 살 수 없게 함이여, 위세를 쌓아서 겁탈하는 것은 옹폐(壟蔽)의 화(禍)를 이룬다.”³⁹⁾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윤덕녕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말한 다음 남편을 권력에 희생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며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권력의 남용은 백성이 의뢰하여 살 수 없게 하고 위세는 진실을 가리는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윤덕녕의 말은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38) 윤덕녕의 상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윤성의 비부(婢夫) 김석을산은 세도하는 가문을 빙자하여 향곡을 짓밟고, 자주 눈을 치뜨면서 홀김으로 인하여 첩의 지아비를 곤욕하였으나 오히려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또 첩의 지아비를 길에서 만나 무례함을 책망하고, 엄동설한의 얼은 땅에 의복을 맡기었기 어 함부로 숙홍 역자(宿鴻驛子)인 윤동질삼 등 6명을 불러다가, 사령을 삼아서 수없이 구타하여 끝내 운명하기에 이르렀는데, 현감 최윤은 오히려 위세에 협박되어 단지 윤동질삼 등 3명만을 가두고, 김석을산 등은 다 불문하여 두었습니다. 홍윤성의 종 귀현·동질삼이 또 겁육하여 윤동질삼 등을 탈취하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누누이 고소하였더니 겨우 잡아 가두었는데, 관찰사 김지경은 또 유지를 청탁하여 한결같이 모두 방면하여 주고, 도리어 첩(妾)의 형 한산 교수(韓山教授) 윤기(尹耆)와 첩의 지아비의 중형 나득경(羅得經) 등에게 정승을 모해(謀害)하였다고 어거지로 엮어서 죄를 만들어 다 잡아다가 공주의 옥(獄)에 가두었습니다. 권세하는 집이 자못 위복을 베풀어 소재지는 잔인하게 해를 끼쳐 백성이 의지하여 살 수가 없고, 위협당하여 쌓이는 것을 상하가 서로 용납하여서 옹폐의 화(禍)를 이루는 것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첩(妾)은 그옥이 통절하게 여기옵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14년 2월 20일.

39) 『세조실록』 45권, 세조14년 2월 20일.

재고하도록 한다.

세조는 상언을 본 후 윤덕녕을 불러 친히 물었고 사건과 관련된 관찰사 김지경·홍산 현감 최윤 등을 불러 문책하였다. 그런데 홍윤성의 종 김석을산이 나계문을 괴롭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는 홍윤성이 홍산에 정승이 되었을 때 고을 사람들 모두 한 시골에서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하며 관노비 2구를 선물했는데 나계문은 노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⁴⁰⁾ 살인을 한 사람은 김석을산과 역리들이지만 그를 방조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홍윤성이며 판결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현감이 홍윤성의 권세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조는 ‘홍윤성의 죄는 애매하다.’며 홍윤성을 비호하였고 이에 당시 집의(執義) 이극돈·헌납 조간 등이 세조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은 상소문에 윤덕녕의 상언을 인용하기도 하였다.⁴¹⁾ 세조는 윤덕녕의 통절함을 심정적으로 가엾게 여기기는 했으나⁴²⁾ 공신인 홍윤성을 치죄하지는 않았다. 세조는 홍윤성의 종 김석을산과 두 노비를 죽이고 윤씨의 절의를 기려 쌀 십 석 곡을 내리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비록 세조의 비호를 받던 홍윤성을 이 일로 죄를 받게 하지는 못했지만 윤덕녕의 상언으로 홍윤성의 만행이 드러나 그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⁴³⁾ 윤덕녕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상언을 한 내용은 근대 전

40) 나계문 살인 사건은 『세조실록』14년 2월 20일, 2월 25일, 3월 5일 기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41) 윤덕녕(尹德寧)은 상언하여 또한 이르기를, ‘권세하는 집이 자못 위복(威福)을 베풀어, 소재(所在)에 잔악하고 해치는 것은 백성이 의뢰하여 살 수 없게 함이며, 위세를 쌓아서 겁탈하는 것은 옹폐(壟蔽)의 화(禍)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중도(中道)에 지나친 것 같더라도 또한 비통(悲痛)하고 분질(憤疾)함의 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조실록』45권, 세조 14년 2월 29일.

42) 윤덕녕은 원통함을 역력히 진달하되 말이 심히 통절(痛切)하여 가엾게 여겼다. 『세조실록』 45권, 세조14년 2월 20일.

환기 여성 교육서인 장지연의 『여자독본』과 김상증의 『본조여사』에 기록되면서 강인한 여성의 표상으로 재인식되기도 한다.⁴⁴⁾

조선전기는 사림파와 훈구파가 대립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사림파는 훈구파의 한 사람인 임사홍(1445~1506)을 소인이라 지목하며 정계에서 축출하고자 하였다. 임사홍 축출에 앞장 선 사람은 그의 조카 이심원(1454~1504)이었다. 주계군 이심원(1454~1504)은 종실들 대부분이 국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自娛하던 것과는 달리 강경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인물이었다. 그는 정치 현실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집권 세력 훈구파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정국 변동을 선도하여 훈구파의 비난을 받는 동시에 사림파의 공감을 얻었다.⁴⁵⁾ 그는 세조조의 훈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을 비판하여 1478년(성종9)에 ‘勿用世祖朝勳臣’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⁴⁶⁾ 이심원이 말한 세조훈신은 임원준·임사홍 부자를 지적하는 것이었고 이심원의 뜻에 동조하는 사림파들이 늘어나자 임사홍은 궁지에 몰렸다. 이때 임사홍의 아내 이씨가 직접 상언을 올렸다.

이씨는 자신의 남편을 내몰고자 하는 사림파 이심원·채수·이창신·표연말 등을 직접 거론하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논증하는 방법으로 상언을 작성하였다. 요약하면, 남편과 친한 사이였는데 배신한 사람(이창신)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따라 동조한 사람(채수)도 있는데 이들의 사주를 받아 조카 이심원이 상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오빠인 이위의 말을 인용하며⁴⁷⁾ 자신의

43) 홍윤성의 줄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6년 9월8일

44) 나계문과 그의 처 윤덕령에 관한 이야기는 야담집 『기재잡기(寄齋雜記)』에도 실려있다.

45) 이현지, 「주계군 이심원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제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26쪽.

46) 『성종실록』93권, 성종 9년 4월 9일.

논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음주, 모해, 칭탁, 무상(無狀), 무고(無辜), 모함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상당히 장문의 상언을 작성하였다. 결국 이씨는 남편인 임사홍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정과 죄가 달라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였다.⁴⁸⁾

반면 이씨에게 지목된 채수는 임사홍의 아버지 임원준이 임사홍의 처로 하여금 거짓을 꾸며 상언하게 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간사하다는 죄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채수 역시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들어 자신을 변호하였다.

사람과가 임사홍의 불의함을 알고 그를 해임시키기 위해 몇 차례 상소를 올린 후라 공론이 이미 임사홍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임사홍 부인의 상언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고모부인 임사홍을 궁지에 몬 사람과의 핵심 인물 이심원은 사위를 아끼던 자신의 할아버지 보성군 이합에게 이 일로 미움을 사게 된다. 이합은 아들 이위를 시켜 이심원의 제사권과 상속권을 빼앗게 하고 이심원이 자신에게 “방자하고 도리에 어긋한 말을 하였다.” 고 무고하였다. 불경죄를 받게 된 이심원을 위해 그의 아내 안씨도 상언을 올렸다.

47) 그들이 <간사하기가> 그러하다는 까닭은 심원의 아버 평성 도정(桴城都正) 이위(李緯)가 신의 오라비인데, 신녀와 더불어 말하기를, ‘아들 심원은 채수와는 숙질(叔姪)간으로, 이창신과 표연말 등 4, 5인이 서로 깊게 교결하니, 주계의 전후(前後) 상소와 근일에 친히 아뢴 일은 모두 다 이들이 시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6일.

48) 이 밝은 시대를 당해서 중친과 교결하여, 겉으로는 공의를 주창하며 남의 허물을 무함해서 글을 농간해 상소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모함하고, 마음에 통쾌함을 얻지 못하면 은밀히 중친을 부추겨서 성상의 뜻을 감동시키려고 꾀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계달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심합니다. 신의 남편은 성질이 본래 어리석고 끈으며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으므로, 성상의 은혜를 입은 이후로부터 더욱 조심을 더하였습니다. 中略 실정과 죄가 다르니 통민(痛悶)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6일.

49) 『성종실록』93권, 성종9년 6월16일.

안씨의 상언에 “심원을 불효한 자라고 말한 것은 조부 보성군 이합과 임원준이 꾸민 것입니다.” 라고 한 내용이 들어 있어 성종은 이심원의 아버지 평성정 이위를 불러서 다시 실정을 물어 보도록 전교하였다.⁵⁰⁾ 이 과정에서 이위는 “심원은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처를 시켜서 상언을 하게 했다.”⁵¹⁾며 며느리 안씨의 상언이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심원이 안씨에게 상언을 부탁하였다는 말은 기정사실화 되어 “심원이 처에게 상언하도록 부탁하여 조부를 고소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마침내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이유로 이심원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몇 년 뒤에 이심원의 아들 이유녕이 “신의 어미가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글을 올려 변명하기를, ‘이는 가옹(家翁)의 아버의 본뜻이 아니고 가옹과 원수진 자가 있어서 조부를 유인한 소위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아비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그 정성이 속에서 우러난 것이지 어찌 신의 아버의 지주(指喉)를 기다린 것이겠습니까?⁵²⁾”라고 하여 사주에 의해 쓴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심원의 조부는 세조대에 관직에 진출한 종실이므로 그 자신이 훈구파와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손자 이심원이 사림파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언론을 펼치자 이전부터 불만을 쌓아왔다. 고모(부)와 조카, 조부와 손자(부) 등 한 가족의 깊은 갈등의 원인은 이처럼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했다.⁵³⁾ 가정사인 동시에 정치적인 사건

50) 『성종실록』123권, 성종 11년 11월 29일.

51) 『성종실록』124권, 성종 11년 12월 16일.

52) 『성종실록』223권, 성종 19년 12월 15일.

53) 이심원은 임사홍에 의해 결국 갑자사화 1504년에 난신으로 몰려 극형을 당하였다. 이심원은 사후 학덕과 절의를 겸비한 충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1517년(중종12)에 贈君, 정려되었고, 1560년(명종15) 충신으로 『속삼강행실도』에 등재되었다. 이현지, 앞의 논문, 30쪽.

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임사홍의 아내 이씨와 이심원의 아내 안씨는 사건에 참여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했다. 이들의 상언은 사주에 의해 쓰였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이 두 여성을 통해 여성들이 가족과의 갈등을 감수하며 정치적 시비를 가리고자 참여했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3.3 소유권과 재산권 추구

조선은 법적으로 허용된 재산권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려고 하였다. 54) 여성들은 노비나 전지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상언을 작성해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였다.

대신들의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이숙번의 처 정씨의 상언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숙번(李叔蕃)의 처 정씨(鄭氏)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의 부처(夫妻)는 노비(奴婢) · 전지(田地) · 가사(家舍) · 재산(財産)을 함께 서명(署名)하여 문권(文券)을 작성하였고, 만사위인 전 현감(縣監) 강순덕(姜順德)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죽고 난 뒤에 내가 전의 문안(文案)을 고치고자 하여 강순덕으로 하여금 가져오라 하였으나, 강순덕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써 모자(母子)의 의리를 어기었습니다. 또 그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수양하여 후사(後嗣)로 삼았다고 청탁하고, 노비를 마음대로 여러 조카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의 자손에게는 1구도 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남편의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55)

54) 이현창, 「조선시대 재산권 · 계약제도에 관한 시문」, 『경제사학』 제56호, 2014, 36쪽.

55) 단종실록』4권, 단종 즉위년 11월 5일.

이숙번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양자에게 재산이 돌아가자 남편과 작성했던 문안을 고쳐 자신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상언을 올렸다. 이 여성의 상언에 대해서는 임금과 여러 대신들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財主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의, 부모와 자식의 상속에 대한 입장 차이, 입후자에 대한 사회적 함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언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통해 당대 여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김지수는 조선사회에서 유교의 가부장적이고 부계 중심적인 체제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였고, 56) 조은은 부인의 재주권과 효의 경합 담론을 보인 사례로 소개하며 조선 전기 부인의 상속권 및 여성의 위치에 대한 주요한 담론적 사건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분석하였다. 57)

정씨의 쟁송은 육조, 대성, 집현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수십 명의 대신이 공박을 하였고 논지는 15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다. 조선조에 재산상속은 가족 공동체를 지탱하는 경제적 힘의 원천이고 나아가 친족제 유지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58) 정씨는 남편이 죽자 가모(家母)의 입장에서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사위의 처신은 “모두 남편의 원하던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지양했다. 이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따르며 자신의 권익을 찾는 것이 더 생산적임을 계산한 고도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56) 김지수, 「법과 감정은 어떻게 동거해왔나-조선시대 재산 분쟁을 둘러싼 효·열의 윤리와 인정」,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95쪽.

57) 조은 「가부장제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대우학술총서, 아카넷, 2004, 246쪽.

58)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135쪽.

재산이나 상속의 분쟁은 처첩 분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태종13년 속전이 공포·시행되면서 처첩 자식간의 차별 상속은 잦은 쟁송이 되며 사대부의 처첩의 한계를 엄하게 하여 봉작과 체전의 법을 만든 것은 적서의 분수를 밝히고 인륜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사안 이 된다.⁵⁹⁾ 관인의 처는 사족부녀로서 남편의 정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를 향유한다. 처첩의 지위상의 차이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어졌다.

한동의 첩은 남편 사후 첩에게 별사전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빼앗아 간 별사전을 돌려달라는 상언을 올렸다.⁶⁰⁾ 표면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지만 이는 자신의 신분 인정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세종은 한동이 생전에 처로 대우했다는 점을 들어 처의 신분을 용인하고 별사전도 돌려주도록 하였다.

사산군 이호는 자신의 여자 형제인 신중호·신우정의 처와 재산문제로 송사를 벌였다. 이호는 자신의 누이가 신중호와 결혼할 때와 과거 급제를 했을 때 많은 재물을 썼으나 자신을 한 번도 와서 보지 않고 업신여겼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반불(飯佛)과 재승을 부탁하여 소비를 많이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의하다고 꾸며서 조정에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관에 고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사산군 이호의 고소에 그의 누이인 신중호와 신우정의 처들도 이에 맞받아 상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록에는 신중호·신우정의 처의 상언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단지 “신랄하게 사산군을 헐뜯어 골육의 친한 사이에 서로 헐뜯고 훼손시켜 풍속이 나빠짐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의 송사는 “동기가 서로 송사함은 강상에 관계되니 끝까지 힐문하여야 할 일”로 여겨졌다. 성종도 “신중호의 처가 사산군의 과실을 진달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59) 조은, 앞의 논문, 243쪽.

60)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29일.

하며 신중호 처의 상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성종은 이호를 불러 “財寶와 골육 어느 쪽이 더 중한가? 참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전교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사산군이 고소를 취하하여⁶¹⁾ 마무리 됐지만 이 사건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형제 사이라도 여성들이 참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음을 보여준다. 숙정옹주⁶²⁾는 속공노비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상언⁶³⁾을 올렸는데 노비의 소유권을 놓고 시누이 집안과 쟁송을 벌이기도 하였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시선은 비판적이었지만 이 시기 여성들은 사위, 친정 오빠, 시누이 등 가족 구성원과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⁶⁴⁾

4. 맺는 말: ‘소통’과 ‘권리’추구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언로를 개방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정립하는 소통문화를 중시했다. 개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위정자에게 알리고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전 과정을 소통이라고 할 때 소통은 상호간의 공감에서 시작되어 서로의 처지와 갈등 혹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며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의 해결은 그것이 조언이든 조정이든 더 나아가 심판 혹은

61) 『성종실록』 184권 성종16년 10월20일.

62) 태종의 서4녀, 정효전의 처.

63) 『성종실록』 224권 성종20년 1월 29일.

64) 이 밖에 불교 신앙 활동과 관련한 상언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우호적이지 않은데 여성들이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 굴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하다.

국가 권위에 의한 판결이든, 모든 갈등의 해결은 소통에서 출발하고 있다.⁶⁵⁾

조선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려는 타인과 개인적 ‘소통’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소통마저 실패했을 때 최고 결정자인 국왕에게 판단을 위임하였다. 위임 받은 국왕은 개인의 소견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간원 등에 사안을 수의하여 이슈화하며 공론화하였다. 일정 사안에 대한 담론의 장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여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공격 발언인 여성 상언은 개인적인 억울함의 해소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여성은 왕족부터 사족, 여종, 궁녀, 귀화한 외국 여성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차이 없이 訴冤 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 상언은 가족이나 가문 내의 문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상언을 검토한 결과 가족과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성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예링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하였다.

여성이 비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상언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죄를 받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상언을 하도록 하거나 어머니나 딸을 부추겨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옹주와 공주, 왕가의 며느리 등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65) 이재룡, 「조선시대 법제도에서의 공감과 소통적 구조」,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2호, 2018, 131쪽.

상언을 올려 부정적인 결과를 낸 경우도 있다. 이는 약자로서의 여성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구하고자 하거나 여성의 공적 발언을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취급한 남성들의 시선과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한 여성이 빚어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이 공적 발언을 통해 소통에 실패하고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98년 북촌 여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여권통문은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는다. 이 글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상소의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며 엄격히 말해 상언에 가깝다. 이전의 상언과 다른 점은 뜻이 같은 여성들이 단체로 정치적 정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근대 전환기에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여성들은 독자투고란에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공표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이러한 여성 독자들의 글 역시 상언의 연속과 변화를 보이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e-청원제도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또한 그 기원을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을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와 태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本朝女史』, 고려대학교 도서관.

2. 단행본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92-245쪽.

정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 53-283쪽.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97-106쪽.

최홍기 외6명,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대우학술총서, 아카넷, 2004, 227-260쪽.

3. 논문

김경숙, 「조선 후기 여성의 정소활동」, 『한국문화』 제36호, 한국문화연구소, 2005, 89-123쪽.

김명숙, 「조선후기 여성의 訴冤활동-효명세자 대청기의 상언·격쟁을 중심으로-」, 『동덕여성연구』, 제7호, 동덕여성연구학회, 2002, 11-29쪽.

김성배,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23권 3호, 국제헌법학회, 2017, 179-216쪽.

김지수, 「법과 감정은 어떻게 동거해왔나-조선시대 재산 분쟁을 둘러싼 효·열의 윤리와 인정」,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81-108쪽.

박경, 「조선전기 처첩질서 확립에 대한 고찰」, 『이화사학연구』 제27집, 이화사학연구소, 2002, 181-208쪽.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9-75쪽.

이재룡, 「조선시대 법제도에서의 공감과 소통적 구조」,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129-162쪽.

이현창, 「조선시대 재산권·계약제도에 관한 시론」, 『경제사학』 제56호, 경제사학회, 2014, 3-55쪽.

이현지, 「주계군 이심원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제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23-66쪽.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358-384쪽.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제46호, 열상고전연구회, 2015.8, 419-447쪽.

황수연, 「본조여사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4호, 열상고전연구회, 2018, 29-55쪽.

Abstract

Official Comment of Chosun : Woman's-pursuit for communication and right

Hwang, Su-yeon

The Chosun Dynasty, which used Confucian ideology as the basis for state rule, changed the marriage system, property rights and the inheritance system so that people could adapt to Confucian society. Women did not accept the new system and customs passively, but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y would be unjust when their rights were violated and claimed their rights. A woma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made a statement when she or her family were involved in something unfair, regardless of her status. The king and other official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The words that became an issue at the time are those that describe wife/concubine and calls for the main line of descent, resistance to pow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truggle for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When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their rights were ignored or denied, Chosun women tried to make personal 'communication' with others who tried to ignore them. In some cases, it was found that even at the risk of conflict with family members, they were often written to find their "rights." A circular letter

of woman's right, column of opinion, petition, etc. are modified. It continues on and on. By examining the official comment of Choseon women, the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attitude can be revealed.

Key words : Chosun, woman, official Comment, petition, communication, right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